

제23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8 월 19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113호

붙임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